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유승용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유승용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규모 시민밀집이용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심의·의결·자문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위원회 구성 인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안 제6조)
- 기타 용어 정비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목적 구체화와 용어 정비.
 - 안 제2조는 심의·의결사항, 자문사항 규정 변경 및 신설.
 - 안 제3조제1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인원 변경 규정.
 - 안 제5조, 제6조는 용어 정비와 소위원회 운영규정 변경 및 신설.
 - 안 제7조~제9조와 제11조 및 제13조는 용어 정비
- 검토 결과
 - 2016년 5월 개통하여 2023년 1월 발생한 도림보도육교 처짐 사고는 보도육교 등의 특성상 면밀한 설계 및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나 총사업비 약 28억원으로 설계심의 절차를 미이행하여 심의 대상을 사업비 규모로 구분하는 현 제도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현실임. 또한 기존 조례상으로는 3종 시설물로 서울시의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진단 심의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임.
 - 안 제2조는 현재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만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설계심의와 진단심의를 거쳤으나, 100억원 미만의 공사도 구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설계심의 기능이 부여될 경우 설계 적정성 미검증으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시설물 진단 확대에 따른 안전진단 대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구에서 소관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시설물 상태의 원인분석과 함께 신속한 보수가 진행되어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시설물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3조는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로 기존과 다른 확대된 분야의 전문가 확보에 타당한 방안으로 적정한 규정 변경으로 보임.
 - 안 제5조 및 제6조는 소위원회 구성·운영은 안전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로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됨.
 - 해당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기술자문위원회의 운영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 방법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승용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06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유승용, 차인영, 이성수
이순우 의원(4인)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중·소규모 시민밀집이용시설에 대하여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확대 적용하여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의·의결·자문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위원회 구성 인원 규정 변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다. 소위원회 운영 관련 규정 변경 및 신설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 안 제6조)

라. 기타 용어 정비 등

3. 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시기간시설의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을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으로, “관한 사항을 정함”을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기능)”을“(설치 및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제1항 중 “15인”을 “20인 이상 50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으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를 “(위원회의 회의)”로 하고, 같은조제1항 중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을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안전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로, “이를”을 “위원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는 안전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2항 중 “4인 이상 8인 이하”를 “4인 이상 8인 이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제6항 중 “제5조”를 “제5조 및 제10조”로 한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

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의 제목 “(자문요청)”을 “(심의·자문 요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자문을 받고자 하는”을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으로, “한다”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7조에 따라”로, “자문의 요청”을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으로, “자문에”를 “심의 또는 자문에”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자문회의”를 “회의”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견청취 등)”을 “(의견 청취 등)”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를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제3항 중 “시행령 제20조제1항”을 “영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사임을 원하는 경우”를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로 하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제13조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를 “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로, “의거”를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도시기간 시설의 복잡 대형화됨에 따라 필요시 적기에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u>건설기술 진흥법</u>」 제6조 ----- ----- ----- ----- ----- ----- <u>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 필요</u> <u>한 사항을 규정함</u>----- --.</p>
<p>제2조(기능)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시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u> 2. <u>공사설계 시행방법 및 그 공법의 적정성</u> 3. <u>보도정비 심의</u> 4. 「<u>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u> 시행 	<p>제2조(설치 및 기능) ①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총공사비가 100억원 미만인 구조물의 신설이 수반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 100억</u>

령」 제74조제6항 본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하는 사항

원 미만인 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공사의 설계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2.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이하 “령”이라 한다) 제19조 제5항제2호에 따른 새로운 기술·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제기된 이의에 관한 사항

3. 영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영 제1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5. 영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6. 영 제19조제5항제7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구가 자

<신 설>

<신 설>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
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
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생
략)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
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문하는 사항

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
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자문한다.

1. 도시 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
책 등에 관한 기술사항

2.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
서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자문
이 필요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
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
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위
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구성) ①-----
----- 20
인 이상 50인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현행
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는 그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단서 신설>

제5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위원회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능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하며 4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서 신설>

때에는 -----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안건이 발생한 경우,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회의에 부친 경우 --

--- 위원회를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사항과 자문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5조제4항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 4
인 이상 8인 이하-----

----. 다만, 소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소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한다.

④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⑤ (생략)

⑥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문요청)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① 구청장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 자문의 요청을 받

영에서 정한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일시적으로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③ 소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소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를 진행할 소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할 수 있다.

④ 소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⑤ (현행과 같음)

⑥ -----
제5조 및 제10조 -----.

제7조(심의·자문 요청 등) -----
-----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려는 -----
--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및 결과보고) ①-----
제7조에 따라 -----
심의 또는 자문의 요청 -----

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자문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9조(의견청취 등) ① (생략)

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생략)

③ 위원이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심의 또는 자문에 -----.

②----- 제1항에 따라 -----

회의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의견 청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
-----.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영 제20조제1항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20조제1항 -----

-----.

제12조(위원의 해촉) 1. (생략)

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제11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생략)

②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기타 관계기관에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1. (현행과 같음)

<삭제>

2.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

제13조(수당 및 여비)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건설기술연구기관 및 그 밖의 --

----- 따라 -

--.